

홍보위원회 규정

제정 2000. 04. 06.
제4차 개정 2023. 03.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홍보위원회(이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외 홍보 활동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2. 각종 입시 홍보자료 제작 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 광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1)
4. 신입생 입학만족도 및 입시홍보정책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6.21)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외협력처장, 입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21., 2022.04.20., **2023.03.15**)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06.21, 2022.04.20, **2023.03.15**)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홍보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16.06.21., 2021.04.16.)

제9조(시행)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평가주기/활용) 신입생 입학 만족도 및 입시홍보정책 조사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 (조 신설 2016.06.21)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변경 2016.06.21.)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외협력자문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98, 2016.06.21)

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34, 2021.04.16)

이 규정은 2021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92, 2023.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월 31일로 한다.